#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4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 안호영 · 윤미향 · 윤준병

송옥주 · 임종성 · 양원영

아줌(비) · 진성준 · 이소영

김수흥 의원(10인)

## 제안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의에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등 생태·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 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 나. 국민신탁운동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다. 관계기관의 장이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 러한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이 가지는 재산보전 및 운 용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 라.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 및 개발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1조제 1항).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를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자치단체가"로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호의 규정"을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준하여 생태·환경 적으로 보전·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모든 국민이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국민신탁자치단체,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국민신탁자치단체"로 한다.

제6장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고 이를 공익 용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자치단 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자치단체(이하 "국민신탁자치단체"라 한 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민신탁자치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 계획
  - 3.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운영계획
  -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

자치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
- 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
- 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 계획의 타당성
- 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 신탁자치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1. 국민신탁자치단체의 명칭
- 2.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

- 은 국민신탁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1. 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자치단체의 명칭
- 2. 국민신탁자치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4(국민신탁자치단체의 회계 등) ① 국민신탁자치단체는 제20 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 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민신탁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5(국민신탁자치단체의 보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국민신 탁자치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

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자치단체에 관하여는 제2조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자치단체"로 본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보칙

제21조제1항 본문 중 "보전재산"을 "보전재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앞에 "제7장 벌칙"을 "제8장 벌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	1 <u>제3조에</u>
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
<u>이</u> 국민·기업·단체 등으로	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
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	<u> 자치단체가</u>
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	
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	
하고 이를 보전 · 관리함으로	
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	
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	
한다.	<b>.</b>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	가

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 5. (생략)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 정에 따른 지역에 준하여 생태・환경적으로 보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 5.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 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 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 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모 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제6장 <u>보칙</u> <신 설> 구성·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장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제20조의2(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자치단체(이하 "국민신탁자치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자치단체로 지정받

-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 본
-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의 취득・보전・관리 계획
- 3.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운영계획
-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 신탁자치단체로 지정하려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
- 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및 수행능력
- 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의 취득·보전·관리 계획의 타당성
- 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의 의견

-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 1. 국민신탁자치단체의 명칭
- 2.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일및 지정사유
-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 신탁자치단체의 지정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0조의3(국민신탁자치단체의

<신 설>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국민신탁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수행 업 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 1. 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자치 단체의 명칭
- 2. 국민신탁자치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자치 단체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국민신탁자치단체의

<신 설>

<신 설>

회계 등) ① 국민신탁자치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자치단체는 제1항 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국민신탁자치단체의 보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국민신탁자치단체는 전체 보전 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 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 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 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 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 <신 설>

#### <신 설>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확정하거나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제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자치단체에 관하여는 제2조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자치단체"로본다.

## 제7장 보칙

]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u>보전재</u>
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
<단서 삭제>

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 략할 수 있다.

- ② <u>제1항 본문의 규정</u>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u>제1항</u>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 는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 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 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 설>

② <u>제1항</u>
1. • 2. (현행과 같음)
③
④·⑤ (현행과 같음)
세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
라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u>다.</u>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